「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제15조

라)「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2) 필요성: 기업 발굴, 선정, 사업관리, 컨설팅,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업무 전반

1)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 개발 자금 지원

3) 멘토링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4) 선정기업과의 협약 체결・변경・해약

5) 선정기업 및 사업성과의 DB 구축・관리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2027. 1.~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50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2,500	1,850	250	400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8.18)

아.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자. 부서의견: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제15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 감사결과: 안건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선정, 전문 컨설팅과 상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풍부한 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전년 대비 12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만큼, 면밀한 성과평가와 철저한 감사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1]을 강화해, 수혜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술 고도화와 뚜렷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구 분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지원대상	5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7년 미만 기술혁신 창업기업	7년 미만 글로벌 시장 진출추진 창업기업
사 업 비	2,500백만원	2,500백만원	200백만원
사업내용	기술고도화 지원 (전문가 멘토링, 기술고도화 초기자금 지원 등)	기술 상용화 지원 (맞춤형 성장 전략, 국내외 인증 지원, 벤처투자 연계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영문 자료,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